

III. 주요국의 퇴직연금 세제체계 및 시사점

본 장에서는 퇴직연금을 실시하고 있는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퇴직연금의 유형과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에 대해서 살펴본다.

미국의 경우, 퇴직연금 plan이 주로 확정기여형 상품으로 운용되고 있으며, 영국은 확정급여형, 확정기여형, 그리고 두 유형의 혼합형 상품으로 나누어져 운영되고 있다.

일본은 2001-2002년의 연금개혁이전에는 후생연금기금과 적격퇴직연금 상품이 주종이었으나, 개혁 이후에는 확정급여형과 미국의 401(k) 연금 플랜을 모방한 일본판 401(k),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3개국의 연금제도를 유형별로 구분하여 살펴보고, 각출 및 급부단계의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를 논의한다. 운용단계관련 체계는 급부시까지 과세 이연되는 것이 일반적이어서 논의하지 않았다.

1. 미국

미국은 퇴직연금 유형 중 확정기여형 상품 위주로 운용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우선 퇴직연금plan 유형에 대하여 살펴본 뒤, 퇴직연금 plan별로 각출단계와 급부단계로 구분하여 세제체계를 설명한다.

가. 퇴직연금의 유형

미국의 퇴직연금제도는 다양한 분류방법이 있지만, 본 연구는 그 성격에 따라 세제적격(qualified) 연금plan, 개인퇴직계좌(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IRA), 세제적격연금 plan으로 분류되지 않지만 세제적격연금 요건 중 일부를 수용하고 있는 연금 plan인 準세제적격(Almost qualified) plan, 세제적격연금 plan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연

1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금 plan인 非적격연금(Non-qualified) plan 등 네가지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1) 세제적격퇴직연금 (Qualified Retirement) Plan¹⁾

세제적격연금 plan에는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연금plan과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s)형 연금plan으로 구분되며, 후자는 다시 401(k) plan과 이익분배연금 (Profit Sharing Plans), 종업원저축제도(Thrift Saving Plan), 주식상여제도(Stock Bonus Plan), Money Purchase Pension Plan(이하 MPP plan), ESOP(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종업원 지주 plan), Target Benefit Plan, Self-Employed Plans(Keoghs Plan) 등이 있다.

먼저 확정급여형 연금plan을 살펴본다.²⁾ MPP plan과 마찬가지로 연간 각출금을 납입하지만, 각출금이 MPP plan과 달리 개인계정에 할당되지 않는다. 대신 하나의 대규모 계정을 유지하여 퇴직 후 연금으로 특정금액을 종업원들에게 지급한다. 지급금액은 종업원의 최종급여, 근속연수 등에 의해 정해진다. 일단 퇴직연금액이 정해지면 회사의 연간 각출금액은 임금인상률과 투자수익률 등을 감안한 연금 수리기법에 의해서 결정된다. 미국에서는 일반적으로 확정급여형 연금 plan은 다른 적격연금에 비하여 복잡하고 관리비용이 높아서 많이 사용되지 않는 편이다. 확정급여형 연금은 급부수령방식에 따라 여러 가지로 분류된다.³⁾ 급여 및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퇴직시에 일정액(flat amount)을 수령하는 방법, 근속연수와 무관하게 급여의 일정비율(flat percentage)을 수령하는 방법, 근속연수 1년당 매월 일정액(fixed benefit amount)을 수령하는 방법⁴⁾, 근속연수 또는 가입연수 1년당 급여의 일정비율을 수

1) 적격연금의 요건 등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양성문(1998)과 손성동·김상의(2001)를 참고하기 바란다.

2) 이는 Pension Plan이라고도 한다.

3) 보다 자세한 내용은 양성문(1998)을 참고하기 바란다.

4) 근속연수 1년당 매달 \$30를 받기로 한 것이라면, 10년 근무시 매월 \$300

령하는 방법⁵⁾ (Unit Benefit Percentage Formula) 등이다.

다음은 확정기여형 연금plan에 대하여 논의한다. 첫째, 이익분배연금 (Profit Sharing Plans)은 종업원에게 회사의 이익을 분배받을 권한을 부여하거나 회사이익을 종업원퇴직에 사용하도록 허용한 연금plan을 말한다. 그러나 사용자들은 이익이 났더라도 반드시 각출금을 지출할 필요는 없다.

둘째, 종업원저축제도 (Thrift Saving Plan)는 종업원들의 연금plan 참여를 강제하는 일종의 확정기여형 연금plan이다. 사업자는 연금에서 규정된 일정한 공식의 종업원 각출금에 대응하여 각출금을 납입한다. MPP plan 또는 이윤분배방식으로 설계할 수도 있으며, 때때로 사용자들이 개설한 다른 연금의 보조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한다.

셋째, 주식상여제도 (Stock Bonus Plan)는 이익분배제도와 유사하나 사용자가 종업원들에게 연금급부액을 회사주식의 일정비율로 지급하는 연금plan이다.

넷째, MPP Plan은 사용자들이 각출금을 각 참여자의 개인계정에 할당시킨다는 점에서 이익분배제도와 유사하지만, 사용자는 각출금을 개인계정에 반드시 불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MPP plan은 비교적 개설과 관리가 용이하고 종업원에게 설명이 쉬운 장점이 있어 중규모 및 대기업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다섯째, 종업원 지주제도(ESOP)는 일종의 주식상여제도이나 추가적으로 MPP plan특성도 가진다. 종업원이 자사 주식으로 연금급부를 수령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한, 현금으로 급부액을 수령할 수도 있다.

여섯째, Target Benefit Plan이 있는데, 이는 확정급여형의 특성을 일부 반영한 MPP plan의 변형이다. MPP plan과 마찬가지로 Target

를 수령하는 방법이다.

5) 급부공식이 근속(가입) 1년당 월급여의 2%를 수령하는 것이면, 월 \$2,000을 받고 있는 근로자가 20년을 근무했다면, 월 \$800의 연금을 수령하게 될 것이다.

2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Benefit Plan의 각 가입자들은 별도의 계정을 가진다. 각 계정에 급여액의 일정비율을 각출하는 대신에 사용자들은 각 종업원들의 퇴직급여액을 추정해야 한다. 첫째의 각출금은 확정급여형과 똑같이 계산한다. 각출금 공식은 특정한 금액이거나 급여의 일정비율이다. 첫째 이후의 각출금 공식은 고정된다. 투자수익률이 예상보다 작아져서 초기 가정이 틀려지면, 퇴직계정의 목표금액을 채우지 못하게 된다. 이럴 경우에도 사용자는 각출금 수준을 조정해야 할 필요가 없다. 반대로 투자수익률이 기대치보다 커지게 되어 종업원 퇴직급여가 목표치를 초과하게 되더라도 증가된 퇴직급여액을 종업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일곱째, 자영자 퇴직연금 (Keoghs plan)으로서 이익분배제도, MPP plan과 같은 확정기여형을 취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확정급여 형태를 취하는 경우도 있다. 예외는 있지만 Keoghs Plan은 대부분이 세제적격이다. 세제적격 연금 plan이 되려면, 21세를 초과하고 3년 이상 근무하고 있는 상근직원은 모두 가입해야 하며, 자영업자는 소득의 일정부분을 자신을 위해 적립하고 또한 종업원을 위해서 같은 비율로 각출해야 한다. 이 plan은 개인연금과 퇴직연금의 특성을 모두 가지고 있다.

여덟째, Cash-Balance Pension Plan은 일종의 이익분배제도와 확정급여형연금의 혼합형(hybrid) 상품이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세제적격퇴직연금은 세제혜택을 많이 받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단점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첫째, 지나치게 많은 규정, 규칙, 그리고 제약이 있다. 둘째, 퇴직연금에 대해 각출한도액이 있다. 셋째, 모든 적격종업원은 법령에 의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넷째, 관리 및 회계처리, 연금수리 및 법률관련 비용이 상당히 클 수 있다. 다섯째, 59.5세 이전의 인출은 일정한 예외조항에 해당되지 않으면 벌칙성 조세(penalty tax)를 납부해야 한다. 여섯째, 가입자 사망시에 수령하는 연금은 연방상속세 외에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한다. 일곱째, 엄격한 조건을 충족해야 연금에서 대출이 가능하고 대출금액은 반드시 5년 이내에 상환되어야 한다. 여덟째, 소득공제대상

각출금에 적용되는 세율보다 급부액을 수령하게 되는 퇴직 이후에는 더 높은 세율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2)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⁶⁾

개인퇴직계좌에는 첫째, 전통적인 IRA로서 근로자 또는 자영자가 스스로 IRA를 개설해서 각출금을 적립할 수 있는 plan이다. 둘째, 이관(Rollover) IRA로서 세제적격연금에서 급부액을 받은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IRA에 예치가 가능한 plan이다. 참고로 2001년 연금법(2001 Pension Law)은 기존의 소득공제가능(deductible) IRA와 이관 IRA의 차이점을 없앴다. 셋째, IRA의 특별유형으로 간이종업원연금(Simplified Employee Pension: 이하 SEP)이 있는데, 이는 사용자 또는 자영자 모두 개설할 수 있는데, 주로 소규모 사업을 영위하는 자영업자들이 이용한다. SEP은 개별적으로 계정을 개설할 수 있으며 세제적격연금의 특성을 많이 가지고 있다. SEP은 개설과 관리가 간편하고 다른 IRA에 비하여 각출한도액이 높은 장점이 있다. 사용자 입장에서는 참여와 수급권규칙(vesting rule)이 세제적격연금보다 불리하다고 평가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SEP를 결정한 사용자는 가상적으로 모든 피용자를 대신해서 각출금을 불입하도록 되어 있고, 수급대상이 항상 100%여야 한다. 이는 퇴직시 근속연수에 관계없이 연금급부액을 100% 지급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시간제(part-time) 종업원을 많이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사업자들에게는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plan이다.

넷째, Simple IRA가 있다. 100인 이하의 소규모사업자들이 쉽게 이용 가능한 IRA로서, 401(k) plan이나 이윤분배연금 plan과 같이 종업원급여 중 일부를 연금저축으로 전환하도록 허용하는 연금plan이다. SEP과 마찬가지로 Simple IRA에 대한 기여금은 각 개인의 계정에 일정비율로 예치된다. Simple IRA는 IRA형과 401(k) 형으로 구분된다.

6) 일부에서는 IRA를 개인연금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2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IRA형 Simple IRA plan은 이전 2년간 소득이 \$5,000 이상이고 당해 연도에 \$5,000까지 벌 것으로 예상되는 종업원들은 누구나 가입해야 하며, 401(k)형 Simple IRA plan은 401(k) plan의 적용요건이 그대로 적용된다.

다섯째, Roth IRA가 있다. 연간 각출액 한도는 전통적인 기여(contributory) IRA와 유사하나, 인출액에 대해서는 비과세되는 plan이다.

IRA plan에는 교육관련 상품들이 많은데, 이는 연방정부가 각종 교육비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교육관련 저축에 세제혜택을 제공한 것에 기인한다. 이에 속하는 상품으로 529 plan (Qualified Tuition Programs), Coverdell Education Savings Accounts (이전의 “교육 IRA”), College Tuition Deduction, Employer-paid Educational Assistance Programs,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Hope and Lifetime Learning Credits 등이 있다.

3) 準세제적격(Almost qualified) Plans

準세제적격플랜(almost qualified plans)에는 첫째, 403(b) plan인 세제이연연금(Tax-Deferred Annuity: TDA)이 있다. 공립학교와 비과세 기관(Section 501(c)(3)에 규정)⁷⁾에서 주로 활용되는 것으로 Section 403(b)에 의해 허용된 연금 plan이다. 403(b) plan에는 종업원의 세전급여를 403(b) plan에 할당하는 것과 사용자가 종업원들을 위해서 각출(종업원의 선택적 각출도 가능)하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403(b) plan은 세제적격 plan의 요건 중 다음 두 가지 기본적인 것을 받아들였다. 하나는 각출금은 일정 한도까지 종업원의 총소득에서 제외된다. 이는 각출금이 소득공제가 되는 것이 아니라 연방소득세 신고대상소득에서 배제되는 것을 의미하지만 조세효과는 동일한 것으로 알려

7) 비영리 병원, 비영리 nursing home, 사립학교, 단과 및 종합대학, 자선기관 등을 말한다. 단, 해당 학교 이사회의 이사들은 가입대상이 아니다.

져 있다. 두 번째 요건은 기금운용수익이 급부 수령 시까지 과세 이연된다는 것이다. 403(b) plan은 어떤 종업원이라도 사용자로 하여금 \$200이상을 각출하도록 하기 위해서는 자신들이 선택적 각출을 해야 하는데, 이때에는 모든 종업원들이 선택적 각출을 해야 하는 非차별원칙이 준수되어야 한다. 주 20시간미만 근무하는 자와 非거주 외국인 등은 적격종업원에 해당되지 않는다.

둘째, 457(b) plan로서 급여의 일부가 총소득에서 배제되고 기금운용수익이 과세 이연되는 미국 내국세법(Internal Revenue Code) 457(b)규정을 충족하는 plan이다. 주로 주 및 지방정부와 기타 비과세기관⁸⁾에서 활용하는 plan이다. Section 457(b) plan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다. 하나는 사용자가 Section 457(b)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격 plan이고, 다른 하나는 충족하지 못하는 非적격 plan(457(f) plan)이다. 적격가입자는 전일근무자, 시간제 또는 계절노동자, 임시직, 독립계약근로자 등이 해당되지만, 457(b)규정은 상기 모든 유형의 근로자가 강제로 가입하는 것을 요구하지 않는다.

4) 非적격연금 (Non-qualified) Plans

많은 회사들이 직원들에게 이연현금상여(deferred cash bonuses), Stock Certificate or Stock Options 등과 같은 금전적 유인 제도를 제공하는데, 이는 401(k)의 적격연금요건 중 非차별요건에 위반되어 非적격연금이 된다. 이 plan의 특징은 사용자의 각출금은 공제되지 않고 연금자산은 신탁보유가 요구되지도 않으며 개별 참여자들의 자산 역시 보호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나. 퇴직연금 plan의 세제체계⁹⁾

8) 비과세기관이란 주정부, county, 시, town, 공공도서관, 수도 및 관개시설 기관, 공공병원, 공원관리공단, 소방서, 지역전기공사, 또한 사립단과 및 종합대학, 사립 비영리병원, 박물관, 신용조합, 농업인단체, 과학 및 연구기관, 사립초중등학교, 공공법률법인, 동물원 등을 말한다.

2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퇴직연금 plan의 세제체계에 대해서는 각출단계와 급부단계의 세제를 중심으로 앞서 분류한 네 가지 유형별로 논의한다.

1) 세제적격퇴직연금 plan

가) 확정급여(Defined Benefit)형 연금plan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아닌 사용자만 각출하며 그 각출금은 손금 처리된다. 또한 각출금은 종업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연간 급부한도액은 가입자 급여 중 가장 높은 3년 동안의 평균급여의 100%와 \$160,000 (2003년 말 기준) 중 낮은 금액이며, 한도액은 물가상승에 따라 \$5,000 단위로 증액되며, 최대급부액을 수령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10년을 가입해야 한다. 급부는 일반적으로 통상소득(ordinary income)으로 과세되며, 유자격자일 경우 10년 평균법도 사용이 가능하며, 다른 IRA로도 이관이 가능하다.

나) 확정기여(Defined Contributions)형 연금plan

① Profit Sharing Plan, MPP Plan, Target Benefit Plan, Stock Bonus Plan과 ESOP

확정급여형 plan과 마찬가지로 원칙적으로 종업원이 아닌 사용자만 각출하며 그 각출금은 손금 처리된다. 사용자 각출금은 종업원 소득으로 과세되지 않는다. 종업원 계정에 대한 연간 각출한도액이 급여의 100%와 \$40,000 중 작은 금액인데(2002년 이후 불변), 한도액은 물가와 연동된다. 사용자에게 의한 연간 각출한도액은 종업원 급여의 25%까지이다.

급부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10년 평균법이 적용되

9) 이상의 내용은 Slesnick and Suttle (2003), J.K. Lasser Institute (2003), Westbrook (2001)을 종합하여 plan 별로 체계화하여 정리한 것이다.

며 IRA로 이관이 가능하다. Target Benefit plan의 급부금은 Level percentage plan일 경우, 급여의 일정비율로 정해지고 근속년수에 따라 감액이 되는데 반해, Yearly Accrual법에 의하면 매년 급여의 일정 비율로 수령하게 된다.

한편, 주식상여제도와 종업원지주제도는 연금 급부액은 다른 plan들과 마찬가지로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10년 평균법 적용과 IRA로 이관이 가능하다. 또한 종업원은 전통적이고 소득 공제 가능한 IRA (한도가 있음), 전통적으로 소득공제 가능하지 않은 IRA, 그리고 Roth IRA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급부를 수령할 때 받은 주식의 수익은 매각 때까지 과세 이연된다.

② 종업원저축제도 (Thrift Saving Plan)

종업원 각출금은 공제대상이 아니지만, 그에 대응하여 각출된 사용자 각출금은 종업원의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으며 적립금에 대한 투자수익은 과세 이연된다. 총급여의 2~6% 범위 내에서 결정되는 기초각출금과 종업원 추가각출금의 합은 16%를 초과할 수 없고, 기업의 대응각출금도 가입자 급여의 25%로 제한된다. 연금급부액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③ Self-Employed Plan (Keoghs Plan)¹⁰⁾

각출금이나 급부액은 순소득(net earnings = 총소득 - 기여금)에 따라 달라지며, Profit sharing plan일 경우, 2001년의 각출금 한도액은 순소득의 15%와 \$25,500 (2002년 \$30,000)중 작은 금액이다. Keoghs Plan을 초기에는 Profit Sharing Plan으로 운영하다가 안정적인 상황에 도달한 후, MPP plan으로 전환시킨 경우, 2001년 기준의 각출금 한도액은 순소득(\$170,000)의 25%와 \$30,000 (2002년 \$35,000) 중 작은 금액이다. Keoghs Plan을 확정급여형으로 운용할

10) HR-10 plans라고도 한다.

2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경우에는 복잡하지만, 자영업자가 40세가 넘을 경우 각출금 증액이 허용된다. 그러나 계리사를 통해 매년 각출을 조정해야만 하는 어려움이 있다. 자영업자이자 종업원¹¹⁾인 경우 반드시 모든 전일근무자를 위해서 각출해야만 본인도 가입할 수 있다. 연금급부금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④ Section 401(k) plans

사용자의 각출금 한도액은 종업원 총급여의 25%이며 한도액까지 손금 처리되며, 사용자 각출금 역시 종업원 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종업원 개인계정에 대한 사용자 각출한도액은 급여의 100%와 \$40,000 중 작은 금액이며, 종업원의 선택적 각출 한도액은 역년 (calendar year) 기준으로 \$12,000로 제한된다. 만약에 50세가 넘으면 \$2,000을 추가로 더 각출할 수 있다 (2003년 기준). 주의할 것은 이연된 총금액이 非차별규칙을 위반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종업원은 전통적이고 소득공제 가능한 IRA(한도 있음), 전통적으로 소득공제 가능하지 않은 IRA, 그리고 Roth IRA를 추가로 가입할 수 있다. 급부인출은 퇴직, 사망 또는 장애, 59.5세에 이르렀을 때, 생계 곤란시에 가능하다. 급부금은 일반적으로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10년 평균법 또는 자본차익처리방법도 적용이 가능하나 1936년 이전 출생자에게만 해당된다. 역시 IRA로 이관이 허용된다.

2) 개인퇴직계좌 (Individual Retirement Account)

가) 전통적 비공제형 · 전통적 공제형 · Roth IRA

각출한도액은 급여의 100%와 \$3,000(기혼자 \$6,000) 중 작은 금액(2002-2004년 적용)인데, 2005-7년은 \$8,000, 2008년 이후에는

11) 자영업자이면서 종업원(owner-employee)이란 단독소유자 또는 지분(또는 이윤)의 10% 이상을 소유(또는 수령)하는 partner를 말한다.

\$10,000로 증액될 예정이다.

<표 III-1> 신고유형·조정총소득별 공제한도액

구분	다른 연금 Plan 미가입	다른 연금 plan 가입*	
미혼 (단독신고)	각출한도액: \$3,000	<u>조정총소득</u>	<u>공제한도액</u>
		\$40,000미만	\$3,000
		\$40,000-\$50,000	점감
		\$50,000 초과	공제불인정
기혼 (합산신고)	각출한도액: 배우자 IRA를 포함하여 각각 \$3,000	<u>조정총소득</u>	<u>공제한도액</u>
		\$60,000미만	\$3,000 (배우자: \$6,000)
		\$60,000-\$70,000	점감
		\$70,000 초과	공제불인정
기혼 (분리신고)	부부가 취업중일 경우 각출한도액: 각각 \$3,000	<u>조정총소득</u>	<u>공제한도액</u>
		\$10,000미만	점감
		\$10,000초과	공제불인정

주: 2003년 기준금액.

특징적인 것은 전통적 비공제형·Roth IRA가 각출금에 대하여 소득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전통적 공제형 IRA는 각출금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지만,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경우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다. 첫째, 배우자가 적격연금에 가입했을 경우 다른 배우자는 공제가 가능하다. 단, 조정총소득이 \$150,000이하여야 하며, 만일 조정총소득이 \$150,000과 \$160,000 사이면 공제액이 점감(漸減)된다.¹²⁾

12) 조정총소득은 총소득액에서 소득조정항목을 차감한 것이다. 이 때, 소득조정항목은 표준공제자, 실제공제선택자의 구별 없이 또한 금액의 다과에 관계없이 적용되는 것으로 사업자의 필요 경비성 경비일체, 이혼위자료 지불액, 개인연금계정(IRA)의 예금액, 자영업자의 퇴직금 계정에의 전환금, 정기예금 해약위약금(은행이 만기일까지의 이자를 미국 내국세청에

2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160,000 이상이면 공제를 받을 수 없다. 기타의 경우는 <표 III-1>에 상세히 기술되어 있다.

<표 III-1>를 2002년 기준금액으로 점감구간(phase-out)에만 적용해보면, 미혼 단독신고는 조정총소득이 \$34,000-\$44,000 (2005년 \$50,000-\$60,000증액 예정), 기혼합산신고는 \$54,000-\$64,000 (2007년까지 \$80,000-\$10,000으로 매년 증액 예정)이 된다. 기혼 분리신고는 <표 III-1>과 동일하다.

Roth IRA는 매년 1월1일부터 연방소득세 신고기간(통상 4월 15일까지, 단, 연장기간 미포함)까지만 개설이 가능하다. Roth IRA 각출금의 소득공제 한도액 점감구간은 다음과 같다. 미혼 단독신고자의 경우, 조정총소득 \$95,000-\$110,000, 기혼 합산신고자 \$150,000-\$160,000, 기혼 분리신고자 \$0-\$10,000이다. 다른 IRA plan과 달리 70.5세 이후라도 소득이 있는 한 계속적으로 각출해도 무방하다. 다만, 초과각출은 초과금액의 6%가 벌칙성 조세로 부과된다.

인출금액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되지만, 非공제대상 각출로 인한 적립 부분은 제외된다. 전통적 공제형 IRA에서는 모든 급부금이 과세되며, 급부금은 70.5세가 되는 그 다음해 4월 1일 이후에는 반드시 인출하여야 하며 최저지급요건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전통적 비공제형 IRA에서 각출금을 제외하고 과세된다.

Roth IRA의 적격급부금¹³⁾은 비과세대상이며, 어떤 연령에서도 각출이 가능하며 인출개시 의무연령도 없다. 가입자가 생존하는 한 최저지급금액요건을 준수할 필요가 없는 특징이 있다.

나) SEP

보고하여 소득으로 보기 때문에 필요한 조정) 등을 말한다.

- 13) 적격요건은 소유자가 59.5세를 넘거나, 사망, 장애, 최초로 주택비용(구입 및 수리 포함)에 사용할 경우 \$10,000(단, 이 금액은 인출 후 120일 이내에 사용되어야 함)까지 등 한 가지를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단, 5년 이상 가입은 기본조건이다.

각출한도액은 종업원 1인당 \$40,000(2003년 기준)과 급여의 25% 중 작은 금액이다. 자영업자 본인은 \$40,000과 20% 중 작은 금액이다. 2003년 기준으로 급여한도액은 \$200,000이며, 사용자 각출금은 손금 처리되나, 연간단위의 각출이 요구되지 않는다. 각출금액 역시 근로자소득으로 간주되지 않는다. 각출시기는 종업원의 연방소득세 신고기간(연장기간 포함)까지 가능하다.

급부는 언제든지 인출이 가능하며, 최저지급요건금액 규정이 적용된다. 급부액은 수령 연도의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일시금 인출에 대해서 10년 평균법이 적용되지 않는다.

다) Simple IRA

종업원의 자발적인 각출이 허용되는데, IRA형과 401(k)형 모두 연간 \$8,000까지 자발적인 각출이 몰가에 연동하여 가능하다. 언제든지 각출을 중지할 수 있지만, 각출액은 급여의 100%를 초과할 수 없다. 사용자 각출금은 plan 개시 60일 이전에 이루어져야 한다. 각출금액은 근로자소득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사용자 각출금은 역시 손금 처리되지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는 IRA형일 경우로서 종업원의 선택적 각출에 대응하여 각출(최고 급여의 3%까지)하며, 5년 중 최소 2년간은 더 낮은 대응비율인 1%까지도 가능하다(단, 401(k)형은 해당사항 없음). 이 경우에는 급여 한도액(\$200,000)은 적용되지 않으나, 401(k)형에는 적용된다. 두 번째는 IRA형으로서 401(k)형과 무관하게 모든 종업원에게 급여의 2%대응 각출이 허용되며, 급여 한도액(\$200,000)도 적용된다.

인출 급부액은 수령 연도의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나, IRA형은 벌칙성 조세가 적용되며, 401(k)형에서는 10년 평균법이 적용된다. 가입후 2년 이내 조기 인출은 IRA형일 경우 “통상소득 과세 + 25% 벌칙성 조세”가 부과되는데 반해, 401(k)형은 “통상소득 과세 + 10%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59.5세 이전의 조기인출은 두 유형 모두 “통상

3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소득 과세 + 10% 별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라) 529 Plans (Qualified Tuition Programs)

소득수준과 무관하게 누구나 지정된 수익자를 위해 현금으로 각출이 가능하다. 각출한도액은 주마다 다르나 통상 수익자당 \$100,000에서 \$250,000 사이에 있다. 어떤 주는 거주자에게 한도를 부여하지 않으며, 거주자가 주정부에 소득세를 신고할 때, 공제를 해주는 곳도 있다. 각출금은 연방소득세에서 소득공제를 허용하지 않고 있다. 가족구성원 중 동일한 사람 또는 다른 사람을 수익자로 하면서 다른 적격 Tuition Program으로 60일 내 이관하면 비과세된다.

급부액을 2001년부터 적격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로 사용하면 가입자의 총소득에서 배제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다.¹⁴⁾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면 소득세 외에 추가로 10%의 별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2004년 1월 이전에는 면세되었다. 수익자가 사망, 장애발생, 이관을 위한 인출, 장학금 수령일 경우에는 예외로 인정되어 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529 plans에 대한 각출은 수익자에게 증여로 간주될 수 있고 각출당 사자에게 \$11,000 (기혼자 \$22,000)까지 증여세 공제가 허용된다. 또한 5년에 걸쳐 각출금을 나눈다면, 매년 \$11,000에서 \$55,000까지 (기혼자: \$22,000-\$110,000) 기부금으로 인정된다. 이와 같은 증여 절차가 완료되면, 상속세가 면제된다. 그러나 5년간에 걸쳐 분할하기로 하였으나 기간 내에 사망했을 경우, 각출자의 상속소득에 나머지 잔액을 포함시켜야 한다. 또한 수익자가 사망할 경우에는 그 상속재산으로 각출금을 합산할 수 있다.

마) Coverdell 교육저축계좌(Education Savings Accounts)¹⁵⁾

연간 각출한도액은 18세 이하의 어린이당 \$2,000 (2002년 이후 기

14) 적격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란 수업료, 교재대, 기타 수수료, 기숙사비(교외 거주일 경우 합리적인 금액까지 인정) 등을 말한다.

15) 이전에는 “교육 IRA” 라고 불렀다.

준)이나 소득공제대상이 아니다. 운용수익은 과세 이연되며, 각출금은 증여세 대상에서 제외된다. 소득수준별 각출한도액은 다음의 <표 III-2>와 같다.

<표 III-2>에 나타난 감액구간의 각출한도액 계산공식은 $[\$2,000 - \$2,000 * \{(\text{소득} - \$190,000 (\$95,000)) / \$30,000 (\$15,000)\}]$ 과 같다. 초과각출(excess contributions)은 그 운용수익을 포함하여 연방 소득세 신고기간(연장기간 포함)이전에 인출해야 하며, 미인출시에는 인출시까지 매년 6%의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인출액이 적격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¹⁶⁾로 사용되면 가입자의 총소득에서 배제되어 과세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 역시 529 plan과 마찬가지로 2001년 이후부터 적용되었다. 수익자가 30세가 넘으면 생일기준으로 30일 이내에 지급해야 하는 강제조항이 있다. 30세 이전에 수익자가 사망하면 수익자의 상속대상재산에 산입시켜 상속세 부과대상이 된다. 수익자 가족 내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plan으로 60일 이내에 이관할 경우에는 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적격교육비를 초과한 급부액은 수익자에게 소득세가 과세되며 10%의 벌칙성 조세를 납부해야 한다. 다만, 소득공제 비대상인 기초불입액에 대해서는 비례적으로 부과된다.

<표 III-2> 소득공제 허용 상한소득

기혼 합산신고	미혼, 가구주, 기혼분리신고	각출금 한도
\$0-\$190,000	\$0-\$95,000	\$2,000
\$190,001-\$219,999	\$95,001-\$109,999	감액
\$220,000+	\$110,000+	0

16) 여기서 적격고등교육기관의 교육비란 수업료, 교재대, 기타 수수료, 기숙사비(교외 거주일 경우 합리적인 금액까지 인정) 등이며, 기숙사비의 경우 6개월 이상 등록했을 경우에만 인정된다. 초중등교육비(공립, 사립, 종교계 학교 불문)에도 적용되는 특징을 가진다.

바) College Tuition Deduction

연간 각출한도액은 가입자의 조정총소득, 신고 유형과 과세연도에 따라 다르다 (<표 III-3> 참조).

<표 III-3> 유형별 각출한도액

과세연도	조정총소득	각출한도액
2002-2003	단독신고자 \$65,000이하(합산신고자: \$130,000)	\$3,000
2004-2005	상동	\$4,000
2004-2005	단독신고자 \$65,000이상 \$80,000이하 (합산신고자: \$130,000 이상 \$160,000이하)	\$2,000

지금까지 살펴본 교육관련 IRA plan에는 2011년까지 유효한 일몰규정이 적용된다. Qualified Tuition Programs의 경우 2011년 이후에는 인출액이 학생의 소득세율로 과세되며, 사립학교의 교육비는 적격교육비에서 제외되며, 비과세 이관도 허용되지 않는다. 또한 Coverdell 교육저축계좌는 각출한도가 수익자당 \$500으로 줄어들며, 초중등학교의 교육비도 적격교육비에서 제외된다. College Tuition Deduction은 2005년 이후 효력이 상실된다. 일몰규정은 Employer-paid educational assistance plans, Student loan Interest deduction 등에도 적용된다.

3) 準세제적격연금 plan

가) 403(b) plan

403(b) plan에서는 급여에 의한 각출금이라도 사용자 각출금으로 인정한다. 따라서 403(b) plan은 Section 415의 각출한도액 적용을 받는 확정기여형 plan이라고 말할 수 있다. 각출금 한도액은 2002년과 2003년 모두 급여의 100%와 \$40,000중 작은 금액이며, \$1,000단위

로 물가에 연동된다. 이 plan에서의 선택적 각출한도액은 <표 III-4>와 같다. 각출한도액은 2006년 이후에는 물가에 연동되어 조정된다.

선택적 각출금에는 현재의 사용자와 15년 이상을 같이 근무한 병원, 교육기관, 가정건강 서비스제공기관, 건강 및 후생서비스기관, 교회 또는 교회단체의 종업원들에게 적용되는 특별한도액이 있다. 특별한도액은 \$3,000, [$\$5,000 \times \text{근속년수} - 403(b), 401(k), \text{SIMPLE IRAs, 1988년 이후의 457 plan에서 납입한 각출금}, [\$15,000 - \text{이전의 선택적 각출금액}]$ 중에서 가장 작은 금액으로 한다.

<표 III-4> 연도별 선택적 각출한도액

연도	50세 미만	50세 이상
2002	\$11,000	\$12,000
2003	\$12,000	\$14,000
2004	\$13,000	\$16,000
2005	\$14,000	\$18,000
2006	\$15,000	\$20,000

급부액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금일 경우 특별세제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나) 457(b) Plan

선택적 각출한도액은 급여의 100%와 <표 III-4>의 금액 중 작은 것이다. 50세 이상이면 일부 금액이 추가된다.

연금급부액은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일시금일 경우에는 특별세제우대혜택을 받지 못한다. 급부액은 종업원이 정상적인 퇴직일이 속하는 연도 이전, 종업원이 근무를 하지 못하게 된 년도, 예기치 못한 응급상황¹⁷⁾이 발생한 연도 이전에는 인출할 수 없다. 종업원이 사망하면 급부액은 수익자에게 일시금 또는 일정기간에 걸친 연금으로 지급되나,

3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수익자의 평균여명 또는 1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수익자가 배우자이면 배우자의 평균여명이 15년이 넘더라도 해당 기간 동안 전액 지급한다.

다) 457(f) Plan

457(f) plan의 각출금은 총소득에 포함되어 과세된다. 급부액은 통상 소득세가 과세된다 (IRC Section 72. 연금규칙).

4) 非적격연금plan (Non-qualified Plans)

비적격이기 때문에 각출금은 소득공제가 되지 않는다. 급부단계에서는 급부액은 보험차익(=급부금 또는 해약환급금-본인부담납입보험료)에 대해서만 과세한다. 과세절차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금수령예상기간을 계산한다. 둘째, 예상수령기간에 연간 연금수령액을 곱하여 예상수령총액을 산출한다. 셋째, 계약에 의해 실제 납부한 금액을 예상수령총액으로 나누어 과세제외비율을 계산한다. 넷째, 당해연도 연금에 과세제외비율을 곱하여 비과세금액을 산출한다. 유족연금 급부시에는 상속세가 과세된다. 일시금일 경우는 전액에 대하여, 확정연금의 경우는 연금연액×근속년수, 종신연금은 연금연액×평균기대여명에 대해서 과세된다.

다. 공통사항

1)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

원칙적으로 연금급부액은 수령연도에 원천징수하고 통상소득으로 과세된다. 공제대상이 아닌 각출금으로 적절한 기초불입액(Basis)은 비과세대상이다. 그러나 각출단계에서 소득공제대상이었던 부분은 과세대상이다. 따라서 비과세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 과세되는데, 그 절차

17) 화재, 폭풍 등의 재난손실, 사고발생 또는 질병 등과 같은 심각한 생계곤란, 기타 종업원이 통제할 수 없는 사건 등을 말한다.

는 非적격연금 plan에서 살펴본 절차와 동일하다. 단, 예상수령기간이 초과될 경우에는 연금전액에 과세된다.

연금을 금융자산으로 수령하면 과세표준금액을 인출시점의 공정시장 가격 (fair market value)으로 환산하여 과세된다. 유의할 것은 투자손실에 대한 (조세환급)청구는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다만, 세후소득으로 각출금을 불입하고 각출금으로 적립된 기초불입액을 결코 인출한 적이 없는 경우, 그리고 최초 인출시 IRA의 기초불입액이 공정시장가격(1개 이상의 IRA이면 결합 가치)보다 클 경우에는 그 손실을 ‘기타특별공제’ (miscellaneous itemized deduction)로 처리할 수 있다.

2)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제적격연금 plan에서 일시금을 받을 경우, 원칙적으로 당해연도에 전액과세 대상이 된다.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 세부담을 줄이려면 10년 평균법(ten-year averaging)과 자본이익 우대법(capital gain treatment)을 사용하는 것인데 자격자가 제한되어 있다. 10년 평균법의 자격자는 1936년 이전 출생자로서 1986년 이후에 한번도 10년 평균법을 사용한 적이 없고, 적어도 5년 동안 퇴직연금 plan에 가입하고 있는 자만이 가능하다. 10년 평균법은 일생에 한번만 사용할 수 있다. 자본차익우대방법의 자격자는 1936년 이전 출생자로서 1974년 이전에 사용자가 제공하는 연금에 가입한 자이다.

10년 평균법에 의한 세액계산절차는 다음과 같다. 1단계는 연금급부액 중에서 과세가능금액을 계산한다. 과세가능금액이란 세후각출금을 제외한 총급부액을 말한다. 2단계는 최저급부공제액 (minimum distribution allowance: 이하 MDA)을 결정하는 단계로서 급부수령액이 \$70,000 이하이면 과세대상총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하여 MDA를 구한다. MDA는 $[\$10,000 - (\text{과세대상총액} - \$20,000) \times 0.2]$ 와 $[\text{과세대상총액} \times 1/2 - (\text{과세대상총액} - \$20,000) \times 0.2]$ 중 작은 금액이다. 3단계는 과세대상총액에서 MDA를 차감하는 단계이다. 4단계는 3

3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단계에서 산출된 금액을 10으로 나누고 이 금액에 1986년 세법의 세율을 적용한다.¹⁸⁾ 5단계는 4단계에서 계산한 금액에 다시 10을 곱하여 최종산출세액을 구하는 단계로서 마지막 절차이다. 과세대상총액이 \$20,000을 상회하면 최저급부공제액은 점차 감소되며, \$70,000 이상이면 최저급부공제액은 “0” 이 된다.

자본차익우대방법은 연금 급부액의 일부를 자본차익으로 간주하여 단일세율인 20%로 납부세액을 계산하는 것인데, 이에 해당되는 금액은 연금관리자가 계산해준다.

3) 조기인출

세제적격연금, 403(b) plan, Simple Plans, 모든 IRA plan들의 급부액을 59.5세 이전에 인출하게 되면, 10%의 벌칙성 조세가 통상소득세 외에 추가로 부과된다. 이에 대한 예외조항에는 60일 이내 이관 및 plan간 직접이관, 장애, 사망 등이 있다. 이외에도 공제대상 의료비에 사용하거나 가족관계에서 발생한 사유¹⁹⁾에 따를 때, 실업기간 동안 건강보험료를 IRA로부터 조기 인출하여 지불할 때, IRA plan에서 인출하였더라도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에 대한 적격교육비로 사용할 경우와 최초로 주택을 구입(최근 2년 이내에 다른 주택을 구입한 적이 없는 경우에만 해당)할 때에는 벌칙성 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것은 일생동안 1회만 허용되며 \$10,000까지만 벌칙성 조세에서 예외로 인정된다. 주택명의를 본인, 배우자, 자녀, 손자도 가능하다. 또한 모든 세제적격연금 plan, SIMPLE, 403(b) TDA plan, IRA 가입자들이 균등정기금으로 연금을 수령할 때(IRC Sec. 72(t)(2)(A)(iv))에도 예외가 적용된다. 균등정기금이란 가입자의 일생 또는 가입자와 수익자의 연생동안 1년에 1회 등을 수령하는 것을 의미한다. 만일 지급기간이 5년

18) 금액이 \$0에서 \$85,790 초과까지 15단계의 세율(최저 11%에서 50%까지)이 있다.

19) 적격가족관계(Qualified Domestic Relation Order)란 이혼 등을 말한다.

이내로 조정되면, 59.5세 이후라도 10%의 벌칙성 조세가 부과되며, 추가로 이자에 대해서도 과세된다.

다만, Simple IRA는 59.5세 이전에 조기 인출한 시기가 가입 후 2년 이내이면 25%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2년이 지나면, 59.5세 이전 인출이라도 10%의 벌칙성 조세(penalty tax)가 부과된다.

4) 사망

세제적격연금 plan 가입자의 사망으로 인한 급부액은 연방상속세 과세대상이다.²⁰⁾ 사망연금 수령자는 상속세 공제 후 추가로 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데, 세액은 급부액이 일시금인지 연금인지에 따라 달라진다. 적용세율은 1986년 미혼 적용세율이다. 1936년 이전 출생자이면 10년 평균법(10-year averaging)을 적용받아 연금으로 수령할 경우보다 납부세액을 현저하게 줄일 수 있다. 상속대상 연금은 59.5세 이하라도 벌칙성 과세를 납부할 필요가 없다.

5) 원천징수제도

미국세법은 1993년 연금급부액에 대해서 20%의 원천징수세를 부과하기 시작하였다. 원천징수제도 역시 예외가 있는데, 첫째 연금 plan 간 직접이관, 둘째 세후각출금으로부터 연금수령, 셋째 연금급부액을 10년 이상 균등정기금으로 수령할 경우, 넷째 \$200 이하의 소액 연금 등이다. 단, 59.5세 이전 인출이면 원천징수세액에 대해서 추가로 벌칙성 조세인 10%가 부과된다.

6) 최저지급요건금액

미국세법에서는 전통적인 IRA상품(Roth IRA 제외)들과 세제적격퇴직연금 plan²¹⁾의 기금을 과세 이연된 상태로 지속되지 않도록 필수지

20) 상속세는 주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1) TSA(Tax-Sheltered Annuity) 403(b), Keoghs plan, 401(k), SIM

3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급시기를 정하고 있다. 이는 퇴직연금적립금이 상속재산으로 전용되어 진정한 의미의 노후소득보장용으로 사용되지 않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된다.

<표 III-4> 단일생명표(Uniform Lifetime Table)²²⁾

연령	제수	연령	제수	연령	제수
70	27.4	86	14.1	102	5.5
71	26.5	87	13.4	103	5.2
71	25.6	88	12.7	104	4.9
73	24.7	89	12.0	105	4.5
74	23.8	90	11.4	106	4.2
75	22.9	91	10.8	107	3.9
76	22.0	92	10.2	108	3.7
77	21.2	93	9.6	109	3.4
78	20.3	94	9.1	110	3.1
79	19.5	95	8.6	111	2.9
80	18.7	96	8.1	112	2.6
81	17.9	97	7.6	113	2.4
82	17.1	98	7.1	114	2.1
83	16.3	99	6.7	115	1.9
84	15.5	100	6.3	이상	
85	14.8	101	5.9		

전통적인 IRA 상품일 경우, 70.5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익년 4월 1일부터, 세제적격퇴직연금은 70.5세에 도달하는 연도와 퇴직하는 연도 중 늦은 연도의 익년 4월 1일부터이다. 세제적격퇴직연금의 경우, 5% 이상의 주식보유자는 반드시 70.5세가 도달하는 연도의 익년 4월 1일에 연금급부를 수령해야 한다. 퇴직연금plan 가입자가 충분한 연금액을 수령하지 않거나 전혀 수령하지 않으면 최저지급요건금액과 실제수령금액의 차액에 대해 50%의 벌칙성 조세(Excise tax)가 부과된다.

PLE, SIMPLE 401(k)과 profit-sharing plan 등을 말한다.

22) 복합생명표(Joint Life and Last Survivor Expectancy Table)는 Slesnick and Suttle (2003), Appendix <Table II> 참조하기 바란다.

만약에 한 개 이상의 IRA이 있을 경우에는 전통적인 IRA상품이면, 각 IRA별로 계산되어야 하며, IRA와 사용자가 제공하는 세제적격퇴직연금에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세제적격퇴직연금이 두개 이상 있을 경우, 각각의 연금에 대해 별도로 최저지급요건금액을 결정해야 한다. 최저지급요건금액은 배우자의 연령에 따라 표에 제시된 除數(divisor)로 적립금액을 나누어서 계산된다. 배우자와 가입자의 나이차이가 10년 이내이면 단일생명표(Uniform Lifetime Table), 10년 이상이면 복합생명표(Joint and Last Survivor Table: IRS Reg. 1.401(a)(9)-9, Q&A3 참조)을 이용해야 한다. 단일생명표를 이용할 경우에는 미혼과 기혼의 계산 금액이 동일하나, 복합생명표에서는 차이가 있으며, 가입자의 결혼여부판정은 역년(calendar year)의 1월 1일을 기준으로 한다.

7) 생계곤란 인출시 과세

미국의 연금 plan에서는 생계가 곤란할 경우에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데, 관련 법규와 연금 plan에서 모두 허용해주어야 가능하다. 생계곤란이란 즉각적이고 중대한 재정상의 어려움 (immediate and heavy financial need)을 말하며, 내국세청(IRS)에서는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의 의료비, 주택저당채권을 이용하지 않는 주택구입, 12개월 이상의 2차 교육기관 (post-secondary) 교육비, 주택에서 퇴거 또는 저당을 막기 위한 비용” 등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생계곤란으로 인한 인출도 소득세가 부과된다. 인출할 때 연령이 59.5세 이하이면, 10%의 벌칙성 조세도 추가로 부과된다. 참고로 생계곤란으로 인출한 금액은 이관(rollover)대상이 되지 않는다.

8) 세제적격연금 plan에서 대출시 과세

미국의 세제적격연금 plan(주로 401(k) plan)들은 가입자에게 적립된 기금 범위 내에서 대출을 허용하고 있다. 최대대출가능금액은 가입

4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자에게 수급권이 보장된 급부액 50%와 \$50,000 중 작은 금액이다. 다만, 이전 12개월 동안 미청산 금액이 있으면 이를 차감하며, 대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상환방법은 적어도 분기단위로 이루어져야 한다. 기혼가입자가 대출을 원할 경우에는 배우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기간을 재협상할 경우에는 신규 대출과 동일하게 처리된다. 대출이자수준은 통상 (우대금리+1~2%)수준에서 결정된다.

만약에 중도에 직장을 떠날 경우, 미상환원리금은 당해연도 소득으로 간주되어 통상소득으로 과세되며, 그 시기가 55세 또는 59.5세 이전이면 10%의 벌칙성 조세가 부과된다.

2. 영국

영국의 연금제도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보편주의적 국민보험인 공적연금, 공적연금에의 적용제외 또는 부가적으로 운영되는 다양한 형태의 직역연금제도가 혼재되어 운영되고 있다. 공적연금제도는 전 국민 공통의 정액급부인 기초연금 (Basic State Pension)과 피용자를 대상으로 불입액과 각출기간에 기초하여 지급되는 소득비례 부가연금 (State Second Pension or State Earnings Related Pension Scheme: SERPS)으로 이원화되어 있고, 사적연금은 기업이 주도하는 직역연금과 개인이 단체 또는 개별적으로 가입하는 개인연금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국 연금제도의 특징은 공적연금 중 소득비례 부가연금부분의 역할을 사적연금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한 적용제외(Contract out)제도가 채택되어서 공적연금과 사적연금이 유기적으로 연계되고 있다는 점이다. 영국에서는 퇴직연금을 직역연금 (Occupational Pension Scheme)으로 부르고 있으며, 가입대상은 민간기업의 종업원뿐만 아니라 공무원, 국영기업의 종업원 등이다.

가. 퇴직연금의 유형

본 연구는 퇴직연금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연금체계 중 퇴직연금에 대해서만 논의한다. 영국의 퇴직연금은 크게 세 가지로 운용되고 있다.

첫째는 확정급여형연금은 급여관련방식 (Salary-related Schemes) 이라고도 하는데, 이는 다시 급부산정기준에 따라 최종급여방식과 평균급여방식으로 구분된다. 지급기준이 되는 급여에는 퇴직시점의 급여, 퇴직 직전 1년간의 평균급여, 또는 퇴직 전 3~5년과 같은 특정기간내의 최상위 급여 등이 있는데 최종급여방식(Final Salary Schemes)이 가장 널리 쓰이고 있다.²³⁾ 최종급여방식의 급부액은 근속년수, 최종소득과 동 제도에서 사용되는 급부발생율 (benefit accrual rate)에 의해 결정된다. 확정급여제도 하에서 각출금은 가입자가 납입액의 일부를 부담하고 나머지는 고용주가 부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가입자가 이직을 할 경우에는 최종급여방식으로 정산하여 연금을 거치하거나 다른 연금 제도로 동일금액 상당액을 이체할 수 있다.

둘째는 확정기여형 연금은 Money Purchase Schemes로 불린다. 가입자는 자신과 회사의 납입액이 저축된 개별 연금계좌를 소유하게 되며, 급부액은 각출금과 투자수익을 재원으로 하여 지급된다. 급부액 수준은 납입액 규모, 납입액의 투자성과, 퇴직시 펀드와 연금의 교환비율 (Annuity rate)에 의해서 결정된다.

셋째, 혼합형 (hybrid schemes) 연금으로서 급여관련방식과 Money Purchase Schemes의 두 가지를 적절히 혼합한 상품이다.

영국 퇴직연금제도의 특징은 사용자들이 퇴직연금에 연금을 추가 납입할 수 있는 추가적 임의각출 (Additional Voluntary Contributions:

23) 세계적격퇴직연금 관련 규정에 의하면, 최종급여 (final earnings)는 기본 급여와 다른 과세대상급여, 예를 들어 초과근무수당 (overtime), 상여금, 수수료, 다른 현물급여 등의 합계를 의미한다.

4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이하 AVC)이 있다는 점이다. 특히, 퇴직연금방식이 최종급여방식(Final Salary Schemes)이나 Money Purchase Schemes일 경우에는 법적으로 AVC제도를 반드시 운영해야 한다. 또한 근로자들은 회사에서 제공하는 AVC 이외에 개인적으로 연금에 가입하여 독립 AVC(Free-standing AVC: 이하 FAVC)로 알려진 개인별 AVC를 추가로 납부할 수 있다. 다만, 유의할 점은 근로자는 AVC가 자신 급여의 15%가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납입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나, 근로자와 회사의 각출금 총액은 연금급부액이 최종급여의 2/3가 넘지 않도록 조정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어떤 연금제도라도 종업원이 각출금을 납입할 수 있는 각출형 상품과 사용자만이 각출금을 지출하는 비각출형 상품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출형 상품에서 최소적립요구액(minimum funding requirement: MFR)을 충족시키는 수준에서 각출이 허용된다면 기금이 흑자일 경우, 종업원들이 일정기간 동안 각출을 하지 않는 비각출형상품과 같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있다.

나. 퇴직연금 각출단계의 관련 세제

영국의 사적연금관련 과세체계는 인출시에 누진적인 소득세율을 과세하는 전형적인 순수 EET형 체계를 가지고 있다.²⁴⁾ 만약에 퇴직연금이 국세청에 의해 세제적격으로 인정받으면, 본인부담 각출금은 소득공제, 사업주부담은 비과세로 損金 처리되고, 연금적립금에 의한 투자수익에

24) Antolin et al, (2004, OECD)은 순수 EET 성격의 세제체계를 가지고 있는 OECD 국가 중 미국, 캐나다, 핀란드, 그리스, 아이슬란드,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스페인, 스위스, 영국, 미국 등 12개국으로 분류되며, 같은 EET 체계이지만 전술한 순수 EET국가들보다 세율에서 훨씬 관대하거나 또는 각출금에 대해 전액소득공제를 인정하기보다는 세액공제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로는 오스트리아, 벨기에,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일본, 한국, 멕시코, 포르투갈, 슬로바키아 공화국 등 10개국이 있다고 분류하고 있다.

대한 비과세, 퇴직시 연금급부의 일부를 비과세일시금(tax-free lump sum)으로 수령할 수 있다. 영국의 퇴직연금은 제도 개선 연도별로 크게 4개, 즉 1970년 이전 체제, 1970년 이후 체제, 1987년 체제, 1989년 체제 등으로 분류된다.

현행 체계인 1989년 체제와 관련된 세제 체계를 먼저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로자의 각출금은 세제적격 퇴직연금일 경우에는 소득(해당 과세연도에 조세와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한 연간 단위의 금액을 의미)의 15%까지 가능하며, 이 범위 내에서는 전액 소득 공제된다. 1989년 이후 적격퇴직연금에서는 소득공제가 허용되는 上限所得(earnings cap)을 도입하였는데, 소매물가지수에 의해 매년 상향조정된다. 상한소득은 2002-2003과세 년도의 경우 £97,200이며 2001-2002과세 년도에서는 £95,400이었다.²⁵⁾ 다만, 소매물가지수는 일반적으로 임금 상승률보다는 낮은 편으로 알려져 있다. 1989-90과세 년도부터 2004-2005과세 년도까지의 상한소득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표 III-5> 소득공제 허용 상한소득

과세년도	금액	과세년도	금액
1989-90	£ 60,000	1990-91	£ 64,800
1991-92	£ 71,400	1992-93	£ 75,000
1993-94	£ 75,000	1994-95	£ 76,800
1995-96	£ 78,600	1996-97	£ 82,200
1997-98	£ 84,000	1998-99	£ 87,600
1999-00	£ 90,600	2000-01	£ 91,800
2001-02	£ 95,400	2002-03	£ 97,200
2003-04	£ 99,000	2004-05	£ 102,000

사업주가 퇴직연금에 각출한 경우, 소득세는 근로자의 총소득에서 납입보험료를 공제한 금액을 기준으로 부과된다.²⁶⁾ 사업주 각출금은 전

25) 과세 년도는 매년 4월6일에서 익년도 4월 5일까지를 말한다.

26) AVC를 사업주가 추가로 납입해줄 경우 정규납입보험료와 AVC의 합계액이 근로자 급여의 15%를 넘어서는 안된다. 또한 합산 연금보험료가 연금

4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액 손금 산입되며 상한은 없지만, 과잉적립(over-funding)에는 제약(restrictions)이 있다.²⁷⁾

1970년 이전 세제 체계는 사업주 각출금은 면세되지만 한도가 없고, 근로자의 각출금은 급여의 15%까지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다. 퇴직연금 급부단계 세제²⁸⁾

영국의 퇴직연금에서 퇴직연금 수급개시 연령은 50세에서 75세 사이에는 언제든지 가능하다. 영국의 연금 급부에 있어서의 특징은 급부를 연금 또는 일시금의 형태로 수령할 수 있다는 점이다. 원칙적으로 연금으로 수령할 수 있는 급부최고액(maximum allowable pension 또는 total benefits)은 세법에 의해 20년 근속의 경우 비과세일시금(tax-free lump sum)을 포함하여 소득상한선까지는 최종급여의 2/3

급부액이 세법상 규정된 최고액을 넘어서는 안된다. AVC를 1987년 4월 7일 이후부터 처음으로 납입하기 시작하였다면, 그 재원으로는 추가연금 급부나 사망급부액을 구입해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AVC로 인한 적립금은 퇴직시에 비과세 일시금을 증액해서 살 수 없다. 기타 AVC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Personal Taxpayer Series IR2: Occupational Pension Schemes: A guide for Members of tax approved schemes, Inland Revenue, 2003. 2. pp. 11-14 참조 (www.inlandrevenue.gov.uk)

27) 한편, 1989년 소득상한선(earnings cap)이 도입된 뒤에 두 가지 비직격 퇴직연금제도가 도입되었는데, 이는 세제혜택이 상대적으로 직격연금에 비해 작다. 고용주각출금은 손금으로 인정되지만, 근로자의 과세대상소득에 상한 없이 포함된다. 근로자각출금은 제한이 없지만 조세혜택이 없다. 급부액에 제한이 없고 비과세 일시금과 과세대상 연금소득 또는 비과세일시금 또는 연금소득으로 각각 수령할 수 있다. 참고로 비직격연금제도는 기금형(funded unapproved retirement benefit schemes: FURBS)과 비기금형(unfunded unapproved retirement benefit schemes: UURBS)이 있다. 기금형은 근무기간동안 각출금이 있지만, 비기금형은 없다. 이런 측면에서 비기금형은 부과방식(pay-as-you-go method)으로 기능한다고 볼 수 있다.

28) 일부 내용은 손성동·김상의(2001)에서 인용하였다.

로 제한된다.²⁹⁾ 퇴직시에 받게 되는 비과세 일시금(tax-free lump sum)은 근속년수 40년의 매년에 대하여 최종상한소득 (capped final remuneration)의 3/80 또는 최초연금액(연 기준)의 2.25배로 제한되어 있다.

1970년 이후 세제 체계에서는 10년 근속 후에 최종급여(상한이 없음)의 2/3까지 연금급부액이 지급되지만, 비과세일시금의 경우 20년 근속이상인 경우 최종급여(상한 없음)의 1.5배까지로 제한된다.

가장 짧은 기간 운영되었던 1987년 체계는 20년 이상 근속 후에 상한이 없는 최종급여의 2/3까지 연금급부액이 지급되며, 비과세 일시금은 £150,000을 한도로 공식에 의해 제한된다.

1) 확정급여형 연금

이제 확정급여형 연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한다. 첫째, 원칙적으로 연금급부액은 전액이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되는데, 2004-2005과세 년도 기준으로 기본세율 납세자 (a basic tax rate taxpayer)에게는 22%의 세율로 과세되며, 인적공제액을 초과하는 금액(과세표준액)이 £31,400(2003-04과세 년도의 경우 £30,500)이 넘을 경우에는 40% 세율이 적용된다.

둘째, 전환되지 않은 일시금(lump sum)은 추가소득(extra income)으로 과세대상이다.³⁰⁾ 일시금으로 일부 받고 나머지를 연금으로 수령하면 가입자의 세부담은 줄어든다. 왜냐하면 연금소득을 자본 및 이자로써 지불하는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이다. 즉, 연금소득의 일부는 국제

29) 퇴직연금최고액 (maximum allowable pension)은 퇴직연금유형과 무관하게 세법에 의하여 동일하게 산출되며 매년 의회에서 조정발표하고 있다.

30) 전환(commutation)이란 일시금을 수령하기 위하여 연금급부액의 일부를 포기하는 것을 의미한다. 많은 퇴직연금들이 전환기능을 가지고 있는데, 교환비율은 연금 £1당 얼마만큼의 일시금과 교환하는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를 전환승수(commutation factor)라고 한다.

4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청에서 연금적립금에 의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규정에 의해 비과세하고, 나머지는 이자로 간주하여 20%의 이자소득세율(savings rate)로 과세하기 때문에 세부담이 감소된다. 이는 연금수급자의 세금부담을 줄여 퇴직이후 시기에 더 많은 소득을 주기 위함이다. 일시금으로 생존연금(life annuities)을 구입하는 것도 동일하게 일부는 자본수익(capital return)으로 비과세, 그 차액(balance)은 20%의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일시금으로 급부액을 수령하는 경우에 대하여 논의한다. 퇴직연금가입자는 근로자이거나 퇴직을 하거나 둘 중의 하나여야 하기 때문에 각출을 하고 급부를 받는 것을 동시에 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1987년 이전에 가입한 경우 통상 퇴직연령까지의 근속년수가 10년 이상인 경우 지급되는 연금액은 최종소득이 2/3를 초과하지 않고 근속년수가 10년 미만인 경우, 최종소득에 대한 지급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은 1/60이며, 2년 2/60, 3년 3/60, 4년 4/60, 5년 5/60, 6년 8/60, 7년 16/60, 8년 24/60, 9년 32/60, 10년 이상 40/60 (2/3)를 각각 적용받는다.

둘째,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가입한 경우 통상 퇴직연령까지 근속년수가 20년 이상인 경우 지급 가능한 연금액은 최종소득의 2/3를 초과하지 않고 근속년수가 20년 미만인 경우 연금액의 최종소득에 대한 비율은 하락한다. 근속년수가 4년인 경우 최종소득에 대한 지급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은 8/60, 6년 12/60, 8년 16/60, 10년 20/60, 12년 24/60, 14년 28/60, 16년 32/60, 18년 36/60, 20년 이상 40/60(2/3)을 각각 적용받는다.

셋째, 1989년 이후 가입한 경우에는 1987년에서 1989년 사이에 가입한 경우에 추가하여 최종소득의 상한 (2003년 4월 5일 끝난 과세연도에는 97,200 파운드)이 적용된다.

비과세 일시금 최고액은 제도개선시기별로 다르다. 예를 들어, 20년 근속의 경우 1970년 이후 체계에서는 최종급여의 1.5배, 1989년 체계

에서는 최초연금 급부액의 2.25배 또는 최종급여 (상한선 있음)의 3/80이다. 20년 이하를 근무하고 퇴직할 경우에는 퇴직연금 및 비과세 일시금 최고액은 비례적으로 감소한다. 다만, 1970년 이전 세제 체계는 연금급부액 중 일부를 비과세 일시금으로 전환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87년 이전 가입자의 경우, 근속년수가 20년 미만일 경우 일시금의 비과세 한도 내의 최종소득에 대한 비율은 줄어든다. 근속년수가 1~8년인 경우, 최종소득에 대한 지급 가능한 연금액의 비율 (accrual rate)은 3/80이며, 9년 30/80, 10년 36/80, 11년 42/80, 12년 48/80, 13년 54/80, 14년 63/80, 15년 72/80, 16년 81/80, 17년 90/80, 18년 99/80, 19년 108/80, 그리고 20년 이상인 경우 120/80, 즉 1.5배를 적용받는다. 1987년에서 1989년에 가입한 경우에는 이하의 산식에 의해 비과세한도액이 산정된다 (손성동·김상의, 2001 참조). 다만, 최종소득의 상한은 10만 파운드이며, 일시금의 비과세 한도액은 15만 파운드이다.

$$\text{비과세한도액} = \{(A - B)/(C - B) \times (D - E)\} + E$$

단, A: 연금급부액,

B: 기본연금액=최종소득액×근속년수/60,

C: 최고연금액=최종소득액×근속년수/30,

D: 비과세한도액=최종소득액×일시금지급비율,

E: 비과세기본액=최종소득액×근속년수×3/80.

1989년 이후에 가입한 경우에는 다음 중 큰 금액이 비과세한도액이 된다.

A: 최종소득액×근속년수(40년을 한도)×급부발생율(3/80)³¹⁾

B: 연금급부액³²⁾×2.25

31) 이 산식은 연금급부와 일시금에 대하여 모두 적용된다.

32) 여기서의 연금급부액은 비과세일시금으로 전환하기 전에 가입자가 받는 초회 연간 연금급부액을 말한다.

비과세 일시금에 관한 중요한 점은 연간 단위로 연금급부액이 £260을 초과하지 않으면, AVC 또는 FAVC를 포함한 연금액을 일시금으로 전환하여 수령할 수 있다는 것이다.³³⁾ 이 경우에도 전환된 소액연금은 과세대상이 되므로 납부세액을 차감한 금액을 수령한다.

2) 확정기여형 연금

확정기여형의 세제혜택은 확정급여형과 동일하나. 급부수준은 최종급여가 아니라 각출금 수준, 납입적립금의 투자수익, 퇴직시 펀드와 연금의 교환비율(annuity rate)에 의해서 결정된다. 세법은 2001년 과세연도부터 확정기여형 연금 구입 시기를 50세(적용제외형인 경우 60세)에서 75세까지 이연시킬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확정기여형에서도 확정급여형에서와 마찬가지로 비과세일시금을 선택할 수 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제도 하에서 중도에 직장을 변경했을 경우, 세법상 선택할 수 있는 연금급부 산정방법에는 다음의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현 직장의 퇴직연금으로부터 받을 연금급부액이 최종급여의 1/60이 초과되지 않을 경우, 연금급부최고액을 초과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현 직장에서 받을 연금액에 적용될 세법상한액을 계산할 때 전 직장에서 받을 연금액을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이 방법은 전 직장의 연금액이 큰 가입자들에게 유리하다.

두 번째는 현 직장의 퇴직연금으로부터 받을 연금급부액이 최종급여의 1/60보다 더 빠르게 적립되는 경우라면, 현 직장의 연금액에 전 직장에서 받을 연금액을 반드시 합산해야 한다. 총연금액이 최종급여의 2/3인 연금급부최고액을 초과하면, 현 직장의 연금급부액이 다음의 두 조건-급여가 소득상한선의 1/4보다 작지 않을 경우, 그리고 전 직장에서 받는 총연금액이 최종급여의 1/60보다 작거나 같지 않을 때-이 충족되지 않으면 급부액을 삭감시킬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은 전 직장에서

33) 이를 소액연금전환이라고 부른다.

소액의 연금을 받는 경우에 유용하다.

지금까지 확정기여형 또는 확정급여형별로 급부세제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앞서 언급하였지만 원칙적으로 연금급부액은 전액이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간주되어 과세되기 때문에 과세표준액에 따라 적용세율이 달라진다. 그런데 영국의 경우 일단 연금을 수령하게 되면, 세법이 허용하는 최대연금액한도까지 매년 증액되어 적용이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 증액은 3%와 소매물가지수로 측정된 생활비 증가 중 더 큰 것을 기준으로 한다. 이것은 유족연금에도 적용된다.

라. 퇴직시기별 급부액

영국의 퇴직연금제도는 퇴직 시기에 따라 급부액이 달라지고 급부액 크기에 따라 적용세율 역시 달라진다. 먼저 지연퇴직(late retirement)에 대하여 살펴본다. 일반적으로 1989년 이후 가입자들은 실제퇴직일 또는 75세가 넘어야 연금급부액을 수령할 수 있다. 1989년 이후 가입자가 아닐 경우, 정상퇴직일에 연금 중 일부 또는 전액을 수령한 경우에는 일단 퇴직으로 간주되어 퇴직일 이후 계속 일을 한다 하더라도 연금급부액이 증액되지 않는다.

정상퇴직일에 급부액을 전혀 찾지 않은 채 정상퇴직일 이후에 퇴직하면 실제퇴직일을 정상퇴직일로 간주하여 이후의 급부액은 증액된다. 이때에는 다음과 같은 다양한 경우가 존재한다. 첫째, 40년 이상 근무하였는데 정상퇴직일 이후 근무를 계속할 경우 추가 1년마다 1/60을 부가하여 최고 5/60까지 부가한다. 일시금으로 수령하고자 할 경우, 매년 3/80씩 추가되어 최고 15/80까지 증액된다. 둘째, 정상퇴직일의 연금액은 소매물가지수만큼 증액된다. 셋째, 정상퇴직일의 연금액이 연금수리적으로 증액되는데, 이는 연금기금의 투자수익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기퇴직의 경우 연금을 수령하거나 수령을 이연시킬 수 있다. 또한 가입한 퇴직연금이 허용하는 경우에는 일부를 수령할 수도 있다. 조기

5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퇴직시의 최고급부액은 1989년 이후에 가입한 것인지 이전에 가입한 것인지에 따라 차이가 난다. 1989년 이후 가입자이면, 실제 퇴직일이 정상퇴직일로 간주되어 연금급부공식에 따라 계산하기만 하면 된다. 1989년 이전 가입자이면, 근속년수에 1/60을 곱하는 공식으로 연금급부액을 받을 수 있다. 따라서 조기퇴직은 비례적으로 급부액이 감소되며 다음과 같은 특별한 공식으로 계산된다.

$$N \times P / NS$$

단, N: 실제근속년수, P: 퇴직시 최종급여에 기초하여 정상퇴직일에 받을 수 있을 연금액, NS: 정상퇴직까지의 총기간.

마찬가지 논리로 일시금도 근속년수에 따른 3/80법칙에 따라 계산되며, $(N \times LS) / NS$ (단, LS: 정상 퇴직시에 받을 수 있는 일시금) 공식에 따른다. 만일 1987년 이후 가입자라면 N / NS 공식이 적용된다. 주의할 것은 확정기여형 연금이라면 조기 퇴직시에도 국세청의 최대 허용액보다 더 큰 금액을 받을 수 있다.

한편, 장해로 인해 더 이상 근무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연령에 관계없이 연금을 즉시 일시금 등으로 수령할 수 있다. 장해사유로 인해 조기 퇴직할 경우에 일시금은 비과세이나 잔액에 대해서는 20% 세율로 과세된다. 일반적으로 장해가 발생했을 경우에는 일시금연금(immediate pension)으로 받을 수 있다.

마지막으로 퇴직 이전에 아예 연금에서 탈퇴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때 급부최대액은 조기 퇴직시와 마찬가지로 방법으로 계산되지만, 기준금액은 연금 탈퇴시 최종급여이다. 계산공식은 N / NS 이다. 이 공식은 연금 가입형태와 무관하다. 만약에 50세 이후에 탈퇴하였다면 연금급부액은 즉시 받을 수 있으며, 즉시 받지 않았다 하더라도 소매물가지수에 의해 조정되기 때문에 물가상승으로 인한 연금급부액의 실질가치 감소분이 보전된다. 1989년 이후 가입자일 경우에는 세법상 50

세에서 75세 사이에서 언제든지 연금급부액을 받을 수 있다. 확정기여형일 경우에는 적립금으로 지급되므로 국세청에서 허용한 한도 이상의 금액을 연금급부로 받을 수 있다.

마. 기타 특수한 경우

사망연금과 같은 특수한 경우를 살펴본다. 이는 확정기여형과 확정급여형 간에 차이가 없다. 근무 중 사망했을 경우의 연금(Death in service benefits)은 정상퇴직일이전에 사망할 경우이고, 퇴직 후 사망연금(Death in retirement)은 퇴직 후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시기에 사망하는 경우를 말한다. “근무 중 사망연금”에는 최종급여의 4배까지인 일시금과 유족에게 지급되는 연금으로서 장해로 인한 수령금액의 2/3 등 두 가지 종류가 있다. 만약에 한 사람 이상의 유족에게 지급될 경우에는 어느 금액도 장해연금의 2/3을 초과할 수 없다.

‘퇴직후 사망연금’은 지급기간 중에 사망하면, 나머지 보증기간동안 연금이 배우자나 부양자에게 지급된다. 이는 영국의 연금제도가 대부분 5년 또는 10년 정기지급형을 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급보증기간이 5년 이내이면, 사망일 이후에 발생할 연금지급액을 모두 합산하여 비과세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한편, 종업원이 퇴직연금에 가입한 후 2년 이내에 탈퇴하게 되면 연금종류에 따라 납입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으며,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 연금은 관련법에 의해 해당 연금 상품이 계속 유지된다. 다만, 이전에 가입한 연금급부에 양도(roll over)된 경우에는 환급이 허용되지 않는다.

환급이 허용되는 퇴직연금일 경우 환급액의 20%를 특별(소득)세율(special tax rate)로 부과하여 공제한 후에 그 잔액을 환급해준다. 또한 AVC로 인해 발생한 세제적격퇴직연금 급부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연금을 수령할 때 또는 당해 연금을 양도할 때 환급이 가능하나, 환급액 역시 과세대상이다. AVC로 인한 환급잉여액에 대한 과세는 특별세

5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율로서 기본세율인 22%보다 10%가 더 높아 환급총액에 대해 32%를 부과한다. 이는 각출금에 대해 주어진 세제혜택과 비과세 적립금 수익을 환수하기 위한 것이다.

참고로 사업주들이 퇴직연금을 위한 적립금과 관련된 세제에 대하여 논의한다. 영국은 세법상 연금적립금을 필요 이상(5%이상)으로 보유하면 잉여금(pension scheme surplus)을 감소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과세되거나 세제적격연금으로서 지위를 잃게 된다.³⁴⁾

잉여금 감액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는데, 첫째 신규 또는 증액된 급부를 가입자들에게 제공하거나, 둘째 사업주의 각출요율을 최고 5년까지 인하시키거나, 셋째 마찬가지로 가입자의 각출요율을 최고 5년까지 인하시키는 것 등이다. 또 다른 하나는 잉여금을 사업주에게 환급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는 일정한 세율(40%)로 과세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이외에도 사업주가 각출을 중단(contribution holiday)하는 방법도 있다.

3. 일본³⁵⁾

가. 일본의 연금구조

일본의 연금체계는 3층 연금제도이지만, 개인연금을 포함하면 ‘4층 연금제도’라고 볼 수 있다 (김화동, 2002, p. 3). 즉, 가입기간에 비례하는 정액연금인 기초연금 (1층), 재직 중의 임금과 가입기간에 비례한 보수 비례연금인 후생연금 및 공제연금(2층), 사적연금인 퇴직연금(3층), 그리고 개인연금 (4층)등이 있다. 민간기업의 종업원을 대상으로 한 후생연금보험과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공제연금은 그 안에 1층

34) 영국 역시 퇴직연금으로 인정받기 위한 적격요건이 있는데, 자세한 것은 양성문(1998)과 손성동·김성의(2001), 전영준(2001)을 참고할 것.

35) 이하의 내용은 김화동(2002), 손성동·김상의 (2001)을 주로 참고하였다.

인 국민연금(기초연금)을 이미 포함하고 있다. 후생연금과 공제연금 가입자의 피부양배우자(국민연금 제3호 피보험자)의 국민연금은 가입자의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각각 포함되어 있다. 이에 해당되지 않는 부류는 자영업자와 학생 등(국민연금 제1호 피보험자)인데, 이들은 자신들이 직접 보험료를 납부한다. 자영업자와 학생들은 기초연금(노령기초연금) 이외에는 가입할 수 없어, 이들이 노후에 수령하게 되는 연금액이 후생연금과 공제연금을 가입한 민간기업 종업원 및 공무원에 비해 현저하게 낮다는 문제가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1991년 국민연금기금을 도입하였다.

한편, 앞서 설명한 공적연금 외에 사적연금으로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있다. 퇴직연금은 민간기업의 종업원들이 가입하고 있는 후생연금에 부가하는 연금인데 세제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 중소기업퇴직금공제제도, 퇴직급여충당금제도 등이 있다.³⁶⁾ 여기서는 후생연금기금과 세제적격퇴직연금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설명한다. 후생연금기금은 노령후생연금의 일부(후생연금의 ‘대행부분’이라고 함)를 국가를 대신하여

36) 중소기업퇴직금 공제제도는 중소기업 퇴직금공제법에 의거, 중소기업자의 상호공제와 국가의 지원으로 퇴직금제도를 설립하여 중소기업 종업원의 복지향상과 고용안정을 도모할 목적으로 1959년 설립된 것이다. 또한, 퇴직급여충당금제도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퇴직금규정을 정하고 있는 기업이 그 종업원의 퇴직으로 지급할 퇴직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손금경리에 의거, 퇴직급여충당금계정에 불입한 금액에 대하여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에 달할 때까지의 금액을 손금으로 산입하는 것을 인정하는 제도이다. 적립금의 계산기준은 퇴직시의 지급액이 된다. 일정비율까지는 비과세로 계상가능하나 비과세비율이 1998년 40%에서 단계적으로 축소되어 2001년도 27%, 2002년 23%, 2003년 이후는 20%로 된다. 자금은 기업 내에서 운용이 가능하지만 그 운용이익에 대해서는 법인세, 주민세, 사업세가 부과된다. 이 제도는 2002년 개정 법인세법에 의해서 폐지되었다. 경과조치로 폐지전인 2002년 3월말 재의 퇴직급여충당금 계정의 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4년간(자본금 1억엔 이하의 중소기업 및 협동조합 등은 10년간) 단계적으로 해소되고 각년도에 세부담이 발생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김화동(2002, p. 32)을 참조하기 바란다.

5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지급하고 여기에 기업의 자체 연금을 부가하여 지급한다. 대행부분 때문에 기금에 가입하고 있는 사업주와 종업원은 국가에 납부하는 후생연금보험료의 일부가 면제된다. 사실 후생연금기금은 기업이 설립한 특별공법인이다. 이는 설립형태에 따라 1개 기업이 단독으로 설립하는 경우, 주력 기업을 중심으로 복수의 기업이 설립하는 것, 업계단체 등을 조직모체로 하여 다수기업이 모여서 설립하는 경우 등이 있다.

후생연금기금은 적격퇴직연금과 같이 퇴직시 일시금 또는 5년이나 10년 정도의 기한부연금으로 지급되지 않고 중신형연금으로 지급된다. 후생연금기금은 확정급여형이기 때문에 일정범위 내에서 연금지불을 보증하는 제도가 필요하게 된다. 따라서 후생연금기금연합회가 지불보증기금을 설립하여 지불보증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한편, 공무원 등이 가입하는 공제연금에도 직역상당부분이 퇴직연금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세제적격퇴직연금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159조에 규정된 적격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사업주가 생명보험회사, 신탁은행, 전국공제농업협동조합 등의 수탁회사와 연금신탁 및 연금보험계약 또는 연금공제계약을 체결하고 국세청장관의 승인을 얻은 연금제도를 말한다 (김화동, 2002, p. 25).³⁷⁾ 이는 15인 이상의 종업원이 있으면 설립이 가능하다.

기업이 부담한 부금은 복리후생비로 전액 손금으로 계상이 가능하고, 대부분의 기업이 퇴직금 사전적립을 위하여 활용하고 있다. 가입자가 부금의 일부를 부담하는 것도 가능한데, 원칙적으로 통상부금(장래의 근속기간에 대한 급부에 충당하기 위한 부금)의 50%가 한도이다. 종업원이 부담한 부금은 생명보험료 공제대상이다. 이 연금은 주로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보급되어 왔고 장래 급부를 위해 예정하고 있던 이윤보다 밀돌 경우 기업은 이를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개인연금은 상품으로서의 연금에 각자가 자유의사로 가입하는 것으로

37) 일본의 세제적격퇴직연금의 요건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양성문(1998), 김화동(2002) 등을 참고하기 바란다.

생명보험, 우체국, 전국노동자 공제생활협동조합연합회 등의 보험형과 신탁은행, 증권회사 등의 저축형이 이에 해당된다.

나. 퇴직연금 유형별 세제

지금까지 일본 연금구조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개괄해보았다. 일본의 퇴직연금관련 체계는 2001년 10월, 2002년 4월부터 각각 시행되고 있는 확정급여연금법, 확정급여형 퇴직연금법으로 인해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으로 대표되던 퇴직연금 구조는 큰 변화가 있었다. 38)39) 따라서 퇴직연금 관련 세제는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을 중심으로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1) 확정급여형 퇴직연금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급부는 노령급부금, 탈퇴일시금, 장애 및 유족급부금 등이 있다. 노령급부금은 가입자들의 노령을 사유로 지급하는 급부로서 지급개시연령은 최소한 5년에 걸쳐 지급토록 하고 있다. 지급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60~65세 사이에서 연금규약으로 정해진다. 단, 퇴직을 요건으로 50세 이상 60세 미만에서 지급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금급부의 수급자격기간은 20년을 넘을 수 없으며 규약에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의 선택에 따라 연금급부대신 전부 또는 일부를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탈퇴일시금은 가입기간이 3년 이상인 자로서 연금급부를 수령할 수 없는 경우에 지급되는 것이다. 장애급부·유족급부는 가입자가 고도장애 또는 사망한 경우는 각기 장애급부 또는 유족급부를 연금 또는 일시금

38) 적격퇴직연금제도는 2001-2002년도 연금제도 개혁을 통해서 폐지되어 2012년 12월 31일까지만 세제우대조치가 허용된다. 결국 확정급여형 연금이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제도의 대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39) 참고로 적격퇴직연금은 퇴직시 일시금 또는 5년이나 10년 정도의 기한부 연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후생연금기금(확정급여형)은 종신연금으로 지급된다.

56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확정급여형 퇴직연금의 세제 체계는 각출 및 운용단계와 관련된 세제 체계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한 뒤, 급부단계의 세제를 논의한다. 사업주 각출금은 전액 손금 계상되며, 본인각출은 생명보험료 공제대상이 된다. 운용 시에는 부금적립금에 대하여 특별법인세가 부과되나 2003년까지는 과세가 정지되어 있었다. 따라서 2004년부터는 특별법인세를 납부해야 한다.

급부는 일시금이나 연금으로 지급받는 두 가지 경우가 있는데 모두 과세된다. 일시금의 경우, 퇴직소득으로 인정되어 퇴직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기준이 되는 퇴직소득금액은 그 해에 받은 퇴직수당 등의 수입 금액에서 퇴직소득공제를 공제한 잔액의 1/2에 상당하는 금액이다. 퇴직소득공제액은 근속년수가 20년 이하인 경우에는 40만엔×근속년수와 같은 공식으로 계산하는데, 만일 이 금액이 80만엔 이하이면 80만엔으로 처리한다. 근속년수가 20년이 넘는 경우에는 80만엔+70만엔×(근속년수-20년)과 같이 계산된다(법 제30조와 기타 특칙 참고).⁴⁰⁾ 퇴직소득은 원천징수대상이며, 이는 퇴직소득에 대한 간이세율표(Simplified Tax table on Retirement Income)에 의하여 결정된다.⁴¹⁾

연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연금소득은 소득세법 상 雜所得에 해당되어(소득세법 제35조) 다음과 같이 처리된다. 잡소득금액은 연금소득금액에서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을 공제한 잔액을 말한다.⁴²⁾ 공적연금 등의

40) 소득세법 제31조에 따르면 국민연금법, 후생연금보험법, 국가공무원공제조합법, 지방공무원 등 공제조합법, 사립학교 교직원공제법 및 독립행정법인 농업자 연금기금법, 후생연금 보험법, 석탄광업연금기금법, 확정급여 퇴직연금법 (단, 가입자가 부담한 금액은 제외)등에 의한 일시금은 퇴직수당으로 간주한다.

41) 원천징수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손성동·김상의 (2001), pp. 103-105, p. 110을 참고하기 바란다.

42)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에 대해서는 김화동 (2002), p. 157을 참고하기 바란다.

공제액은 다음 <표 III-6>과 같다.

<표 III-6>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

연령	당해연도의 공적연금 등 수입금액 합계	공적연금 등의 공제액
65세 미만	130만엔 이하	70만엔
	130만엔 초과 410만엔 이하	수입금액×25%+37.5만엔
	410만엔 초과 770만엔 이하	수입금액×15%+78.5만엔
	770만엔 초과	수입금액×5%+155.5만엔
65세 이상	260만엔 이하	140만엔
	260만엔 초과 460만엔 이하	수입금액×25%+75만엔
	460만엔 초과 820만엔 이하	수입금액×15%+121만엔
	820만엔 초과	수입금액×5%+203만엔

주: 김화동, 2002, p. 157에서 재인용

2)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일본판 401k인 확정기여형의 급부 역시 노령급부금, 장애급부금 및 사망일시금의 세 종류가 있다. 또한 특수한 급부로서 탈퇴일시금이 있는데, 탈퇴 후 다시 연금제도에 가입하기 어려운 상태이면서 각출연수가 3년 이하일 때에 수령이 가능한데 개인형과 기업형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를 표로 정리한 것이 <표 III-7>이다.

노령급부금은 지급개시연령은 원칙적으로 60세에 도달하면 지급하게 되어 있고(사실상 60세 이전에는 인출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의미) 늦어도 70세에는 급부를 개시해야 한다. 가입자기간⁴³⁾이 10년 이상이면

43) 가입자기간이란 기업형(개인형 포함)의 가입자기간과 기업형(개인형 포함)연금의 운용지시자(의미: 가입자자격을 상실하고 적립금의 운용지시를 하고 있는 자)기간을 모두 합산한 기간을 말한다. 기업의 퇴직금제도나 적격퇴직연금, 후생연금기금제도로부터 자산을 이관한 기업형 연금에서는 그 대상이 된 과거 근무기간도 포함된다. 다만, 60세가 되면 부급불입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때까지의 기간이 부족한 가입자를 위해 경과조치로서 가입자기간을 다음과 같이 다축하고 있다. 노령급부금의 가입자기간이

58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수령이 가능하다. 지급형태는 연금(5~20년 유기연금 수령이 원칙) 또는 일시금(연금규약에 정해져 있을 경우)인데 연금은 공적연금 등의 공제를 하며, 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에 해당된다. 계산방법은 확정급여형과 동일하다.

<표 III-7>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의 급부종류

구분	지급사유	지급형태	세제취급
노령급부금	60세 도달시(늦어도 70세에는 수급개시)	연금 또는 일시금	연금은 공적연금 등 공제, 일시금은 퇴직소득공제
장해급부금	가입자가 일정한 장애상태로 된 경우	연금 또는 일시금	비과세
사망일시금	가입자의 사망	일시금	상속재산으로 간주하여 상속세 과세
탈퇴일시금	가입기간이 3년 이하로서 계속 가입할 수 없는 경우 등	일시금	소득세, 개인주민세 과세

주: 김화동(2002), p. 148 <표 4-4>에서 재인용

장해급부금은 가입자가 일정한 장애상태로 된 경우이고 지급형태 역시 노령급부금과 마찬가지로 연금(5~20년 유기연금) 또는 일시금(규약에 있을 경우에 한함)이며, 비과세 대상이다. 장해급부금의 수급권자는 노령급부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

노령급부금을 수령하고 있는 도중에 사망할 경우 적립금이 남아있으면 유족에게 사망일시금이 지급된다. 사망일시금은 가입자의 사망시 지급되며 일시금으로 수령하며 상속재산으로 간주되어 상속세 과세(법정 상속인수×500만엔까지 비과세)된다. 사망일시금을 수령할 자격이 있는 유족은 배우자, 사망한 자가 사망한 당시 생계를 같이 하던 자,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상기 이외의 친족, 사망한 자가 사망한 당시 생계를 유지하지 않고 있었던 자, 부모, 손자, 조부모 및 형제자매 순이다. 만약에 배우자가 없으면 자식이 수령하고 수급권자가 둘 이

10년 이상이면 수급개시연령은 60~70세, 8~10년이면 61~70세, 6~8년이면 62~70세, 4~6년이면 63~70세, 2~4년이면 64~70세, 1월~2년 미만이면 65~70세이다.

상이면 균등 분배한다. 가입자가 사망하기 전에 가입자를 지정하였으면 그에 따른다.

탈퇴일시금은 일시금으로 수령하게 되어 소득세 및 개인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청구조건은 가입자기간이 3년 이하일 것과 가입자 자격이 없는 때로부터 2년 미만이어야 한다.

참고로 일본판 401k, 즉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다양한 세제우대혜택이 제공되고 있는데 그에 관해서 자세히 살펴본다. 401k도 기존 세제적격퇴직연금과 마찬가지로 각출단계, 적립금운용단계, 급부단계 등 3단계에서 우대조치를 받는다. 부금각출단계에서는 기업형 연금에서는 회사 등이 가입자를 위해 각출하는 부금을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고 (따라서 절세가 가능), 기업의 각출금은 법인세법상 손금산입이 가능하며, 개인형 연금일 경우는 가입자가 각출한 부금을 자신의 소득에서 공제가능하게 되어 있다.

소득공제대상 각출한도액은 자영업자가 개인형 연금에 가입할 경우가 가장 높다. 국민연금기금의 부금과 합쳐서 연간 81만 6,000엔(월 6,8000엔)이다. 다음으로 많은 것은 근무처에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회사원이 기업형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간 432,000엔(월 36,000엔)까지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세 번째는 근무처가 확정기여형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는 회사원이 기업형 연금에 가입하는 것이다. 연간 216,000엔(월18,000엔)이다. 넷째, 각출한도액이 가장 적은 경우는 근무처가 확정기여형과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어느 것도 도입하고 있지 않아 개인형 연금에 가입하는 회사원이다. 연간 180,000엔(월15,000엔)이다.⁴⁴⁾ 참고로 알아둘 것은 확정기여형 연금은 각출한도액을 초과하여 부금을 각출하는 것 자체가 금지되어 있다는

44) 이상에서 보듯이 퇴직연금제도의 유무에 따라 각출한도액에 차이를 둔 것은 다음과 같다. 후생연금기금을 가입한 기업이 지출하는 종업원의 부금은 비과세대상이지만, 퇴직연금을 도입하고 있지 않은 회사는 그런 세제혜택을 받을 수 없다. 따라서 퇴직연금이 없는 회사의 각출한도액을 높여 줌으로써 과세의 공평성을 기하고자 하였다.

60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점이다.

<표 III-8>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의 세제체계 비교

구분		각출단계	운용단계	급부단계
공적 연금	후생연금보험(확정급여)	사업주부금: 전 액손금산입 가입자각출금: 사회보험료공제	적립금: 비과세	연금수령: 잡소득으로 과세(공적연금 공제 등)
사적 연금	후생연금기금 (확정급여)	상동	적립금: 원칙적 비과세 단, 대행부분의 2.84배에 대해 서는 특별법인 세와 주민세 과 세	연금수령: 잡소득으로 과세(공적연금 공제 등) 일시금: 퇴직소득으로 처리
	적격퇴직연금	사업주부금: 전 액손금산입 가입자각출금: 생명보험료공제 (가입자 부담이 있을 경우)	가입자부담금을 제외한 적립금 에 특별법인세, 주민세 과세	상동, 단 가입자부담 분은 제외
	일본판 401k (기업형)	사업주부금: 전 액손금산입	이자, 배당 등 소 운용수익은 비과세 적립금에 대해 서는 특별법인 세, 주민소득 부과	(노령급부금의 경우) 연금수급시: 공적 연 금 등 공제 일시금: 부금불입기간 을 근속년수로 간주 퇴직소득과세
	일본판 401k (개인형)	가입자부금: 전 액소득공제	상동	상동

주: 김화동(2002), p. 158 <표 4-6>에서 재인용.

적립금 운용단계에서 발생하는 수익인 이자, 배당 등은 비과세이다. 이 수익은 급부시까지 과세가 이연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적립금에 법인세가 부과되는데, 매년 4월 1일 현재의 연금자산 잔고(부금+운용손익분)에 대하여 특별법인세 1%, 법인주민세 0.173% 등을 합한 총 1.173%의 세금이 부과된다.⁴⁵⁾

한편, 퇴직연금을 제도 간에 서로 이관(roll over)해도 세제우대조치

45) 이 제도는 일본 특유의 제도인데, 적격퇴직연금에 특별법인세를 부과하는 것과 형평을 기하기 위해 도입된 것이다.

를 계속 받게 된다. 그러나 확정급여형에서 확정기여형으로 이관은 허용되나 반대 방향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일본판 401k는 자영업자에서 회사원, 회사원에서 자영업자로 전환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고, 기업형과 개인형은 통산되는 특징을 가진다. 또 다른 특징은 70세까지 연금지급신청을 하도록 한 것은 세제상 우대되는 401k제도를 이용하여 의도적으로 상속재산을 형성하는 것을 막고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연금으로서의 성격을 분명히 하기 위한 조치라는 것이다. 또한 60세부터 연금을 수령할 수 있게 한 것은 대부분의 공적연금의 지급개시연령을 65세로 상향조정하고 있어 대부분의 기업정년이 60세인 현실을 반영하여 정년 후 65세까지 소득공백기를 채워줄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퇴직연금에 기대하고 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논의한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에 대한 세제체계를 비교하여 표로 정리한 것이 <표 III-8>이다.

4. 시사점

지금까지 미국, 영국, 일본 등 3개국의 퇴직연금과 관련된 세제체계를 살펴보았다. 전반적으로 각국의 독특한 역사적 배경, 시장 환경, 세제의 특성과 기존의 제도 등을 종합하여 세제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국가별로 큰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영국의 경우 제도개선 연도별로 1970년 이전 체제, 1970년 이후 체제, 1987년 체제, 1989년 체제라는 명칭으로 불리고 있어 네 번이나 제도 개선이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일본은 2001-2002년의 연금개혁을 통하여 적격퇴직연금과 후생연금기금 등의 기존 퇴직연금 구조를 확정급여형과 확정기여형 연금으로 변경하여 일대 전환을 시도하였다. 이와 달리 미국은 확정기여형 중심으로 다양한 형태의 퇴직연금을 운용하면서 각 plan별에 대한 세제혜택을 차별화하였기 때문에 시기별로 제도가 변화된 것을 찾을 수 없었다.

62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이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조사대상 3개국의 퇴직급여 관련 세제체계 중 급부단계 세제의 차이점을 논의한다. 우선 일본과 우리나라는 체계가 거의 유사하지만, 일본은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분류하고 개인연금을 별도로 취급하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개인연금이든 공적연금이든 관계없이 모두 연금소득으로 간주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표 III-9> 국가별 퇴직급여 급부단계별 세제 비교

국가	퇴직일시금	퇴직연금	비고
한국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비례공제 -근속년수 공제	<연금소득세> -연금소득공제 -600만원/년 이상	-연간 600만원이상 수령시: 종합소득세 대상
일본	<퇴직소득세> -퇴직급여비례공제 -근속년수 공제	<잡소득세> 단, 퇴직연금을 공적연금으로 간주	한국 체계와 유사
미국	통상소득으로 과세 (전액과세대상) -단, 10년 평균법과 자본차익우대법 해당자는 경감 가능	통상소득으로 과세 -단, 10년 평균법과 자본차익우대법 해당자는 경감 가능	일시금과 연금 과세 차이 없음
영국	근로소득으로 과세 비환일시금: 추가 소득으로 과세대상	좌동	비과세일시금과 연금 병행 수령가능.

미국은 특별히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과세방법에 차이를 두고 있지 않으나, 1936년 이전 출생자들을 대상으로 세액경감이 가능한 10년 평균법과 자본차익 우대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영국은 일시금과 연금 공히 근로소득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지만, 일시금의 경우 비과세를 일부 허용하고 있다. 다른 나라와 달리 비과세 일시금에 한도액이 있다.

요약하면 미국과 영국은 사실상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소득성격을 동일하게 간주하고 있음에 반해, 우리나라와 일본은 두 소득을 다른 성

격으로 간주하여 별도로 처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영국은 일시금에 대해서 비과세를 허용함으로써 일시금을 우대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나, 미국은 일시금과 연금소득 공히 특정 계층에게만 혜택을 주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는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성격을 다르게 볼 뿐만 아니라 세제혜택도 차별적으로 주고 있다. 이런 측면에서 일본과 우리나라의 퇴직일시금 우대조치는 영국과 맥을 같이 하지만 소득의 성격규정은 다른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다음은 3개국의 퇴직연금 관련 세제체계가 우리나라 퇴직연금 세제에 주는 시사점들을 제시해본다. 첫째, 퇴직금제도를 가능하면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하는 것이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의 주요 목적 중의 하나라면, 미국과 같이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을 차별하지 않는 세제체계를 도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현행 법정퇴직금제도의 저율과세에 익숙해진 우리의 현실에 비추어 퇴직연금제도로의 전환을 세제차원에서 돕기 위해서는 영국 세제 체계를 과도기적으로 도입, 운영하는 것이 현실적이다. 사실 영국은 비과세일시금과 연금으로 혼합하여 수령할 수 있도록 허용함으로써 우리나라와 같은 퇴직일시금과 연금과의 세부담이 현저하게 차이나는 것이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반면에 일본은 우리나라처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급여를 각각 퇴직소득과 연금소득으로 구분하고 세액계산방법도 달리 하고 있어 계산세액에 차이가 발생한다. 따라서 퇴직연금제도의 도입 명분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영국 세제와 유사한 체계를 도입·운영하고, 향후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의 세제를 동일한 체계로 바꾸어 운영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둘째, 미국은 연금소득을 별도로 분류하고 있으나,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처럼 종합소득으로 과세하고 있다. 세액계산절차는 연금과 일시금과 관계없이 차이가 없으나, 일시금은 연금보다 금액이 크기 때문에 당연히 세부담이 커서 연금보다 훨씬 불리할 것이다. 이 점에서 우리나라 또는 일본과는 완전히 구별된다. 다만, 일시금으로 수령할 경우에도 10년 평균법(Ten-year averaging)을 적용하면 세액이 감소되지만 이

64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세제체계 연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계층은 1936년 이전 출생자로 제한되어 있다. 영국의 경우, 퇴직연금 급부액을 근로소득(earned income)으로 간주하여 과세하고 있다. 따라서 동일한 퇴직급여를 퇴직일시금과 퇴직연금으로 구분 지급된다는 이유로 성격이 다른 소득으로 구분하는 현행 방식은 재고할 필요가 있다.

셋째, 퇴직연령의 경우, 미국은 조기인출에 따른 벌칙성 조세를 59.5세(일부 plan은 55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일본은 60세 이후에 퇴직연금을 수령하도록 하였고, 영국은 50세에서 75세까지로 규정하여 각국의 상황에 맞는 인출시기를 규정하고 있다. 참고할 것은 일본의 경우 평균 정년이 60세 전후이고 공적연금의 수급개시기간이 65세로 되어 있는데, 노령급부금은 5~20년의 유기연금을 원칙으로 하고 일시금은 규약 상 선택사항으로 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대부분의 기업에서 정년이 55세로 되어 있고 공적연금인 국민연금의 수급개시기간인 65세로 퇴직연금기간이 일본보다 5년 정도 더 필요한 상황인데도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안)』에서는 퇴직연금의 지급기간을 5년 이상으로 규정하여 가교연금으로의 역할에 한계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최소지급기간을 10년 이상으로 바꾸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넷째, 사망으로 인한 연금을 수급할 경우, 미국은 연방 상속세 부과 대상이며, 영국은 ‘퇴직후 사망’ 일 경우 지급보증기간이 5년 이내이면 사망일 이후에 발생할 연금지급액을 비과세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일본은 사망일시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공적연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지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0조), 퇴직금은 상속세 과세대상으로 처리되고 있다. 그런데 연금소득의 범주에는 일본과 마찬가지로 공적연금까지 포함하고 있어 퇴직연금 수혜자의 사망에 따른 일시금을 퇴직금제도의 전환이라는 관점에서 상속세를 부과할 경우, 공적연금과의 과세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부분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섯째, 미국의 세제적격퇴직연금인 401(k) plan에서는 일정한 조건 하에서 중도인출과 대출을 허용하고 있음에 반해 일본의 확정기여형인 일본 401(k)은 60세 이전에 원칙적으로 인출이 불가능하여 유연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입법 예고된 법안에 따르면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서 중도인출조항을 규정(확정급여형은 중도인출 불허)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미국과 유사하게 천재지변, 가입자 또는 가입자의 직계존비속의 3월 이상의 입원치료 또는 요양을 요하는 상해·질병의 발생, 무주택가입자 본인의 주택구입, 가입자의 6개월 이상의 실직 등이 다. 이에 대한 과세도 미국 등의 사례를 참조하여 처리해야 할 것이다.